

전주지방법원 2023. 7. 13 선고 2022가단273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3. 6. 29.

판 결 선 고 2023. 7. 13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전북 무주군 E 대 811㎡에 관하여 2017. 9. 15. 체결한 매매계약을 24,903,8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4,903,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3. 14. D에게 30,000,000원을 대출하였고, 2022. 10. 27.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, 절차비용, 연체료 등 합계액은 24,903,820원에 이른다.

나. D은 2017. 9. 15.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인 전북 무주군 E 대 811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7억 3,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7. 10. 27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0. 27. 그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대지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.

라.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7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)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

가) 원고는 2018년 10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았음에도 제척기간인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. 그러나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2. 9. 7.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안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인 2022. 9. 14.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)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피고 대표자가 D이므로 피고가 D의 재산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.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

아니한다.

다)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가상당액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가격이 적정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매매가격이 시가상당액이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가사 그 매매가격이 시가상당액이고 이를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매각한 것은 원고 등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지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그 지상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해졌으므로,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.

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7억 3,000만 원 상당이고 원고가 위 가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24,903,82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4,903,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승곤